

#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815호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30일
- 라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5일

## 2. 제안이유

- 가.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시설로 아동복지 서비스 개선 및 현행법령을 준수하고자 시설 분리하여 연두꿈터(영유아 양육시설) 위탁을 위해,
- 나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꿈나무마을 연두꿈터(영유아(3세 미만)전담양육시설) 운영·관리

- 위탁기간 : 4년 (2016.1.1.~ 2019.12.31) 예정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수의계약
- 소요예산(안) : 1,736백만원 내외(연간 시비 100%)

**나. 대상기관 : 1개소**

시 설 명	위 치	시설규모	주요공간
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	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-11외(응암동 42-5외)	- 대지 43,203.00㎡, - 건물면적 3,671.84㎡, - 지하1층/지상4층	○ 연두꿈터(영유아 양육) - 생활실, 세탁실, 조리실 등

**다. 주요 위탁사무**

- 보호대상 3세 미만 영·유아 아동의 보호·양육·치료
- 보호대상 3세 미만 영·유아 아동의 일시보호 및 보호자에게 인도
-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4. 참고사항**

**가. 관계법령**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시설의 설치) 제5항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제2항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라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수탁자 선정)
- 가족담당관-11755(2015.6.29. 시립 꿈나무마을 시설 분리 계획)

**나. 예산조치 : 약 4,812 백만원 (연간 시비 100%)**

**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**

**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**

## 5. 검토의견 (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)

### 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‘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운영·관리’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<sup>1)</sup>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
  - 보호대상 3세 미만 영·유아 아동의 보호·양육·치료 및
  - 보호대상 3세 미만 영·유아 아동의 일시보호 및 보호자에게 인도에 관한 사항 등으로,
- 위탁기간은 4년(2016. 1. 1 ~ 2019. 12. 31.)임.

### 나.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시설분리 추진 근거 및 내용

- ‘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’은 시립으로 운영되는 아동 양육시설로서, 정원 850명 규모(2015년 10월 현재 현원 618명)의 대규모 시설로, 현재 위탁 운영자는 (재)마리아수녀회(위탁기간 2015. 1. 1~2019. 12. 31, 5년간)이며, 2015년 기준 시비 보조금은 126억원 임.

---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

## 〈꿈나무마을 운영 현황〉

시설현황

구 분	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(아동양육시설)
소재지	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-11(응암동 42-5번지)
운영법인	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
주요기능	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·양육
위탁운영기간	2015.1.1.~2019.12.31(최초 위탁일 : 1975.1.1.)

보호아동 현황

(2015. 5월 현재)

구 분	계	미취학	어린이집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	대학생 이상
계	620	38	2	129	310	136	5
남	334	24	2	67	162	76	3
여	286	14	0	62	148	60	2

종사자 현황

○ 꿈나무마을

(2015. 6월 현재)

구분 (현원)	법 인 자부담 인 력	서울시 지원(명)							
		소계	원 장	사 무 국 장	임상심리 상담원	생 활 복지사	자립지원 전담요원	사무원	보육사
			간호사	영양사	조리원	위생원	관리인	기타	
236	13	223	1	1	1	20	3	2	161
			2	2	12	2	2	14	

○ 알로이시오 초등학교

(2015. 1월말)

계	교 장	교 감	교 사	특수학급 교 사	교과전담 교 사	행정직	기 타
18	1	-	8	2	3	2	2

부동산 현황

- 부지현황 : 48,385.00㎡(14,662.12평)
- 건축물 현황 : 27,910.48㎡(8,457.72평)

세입예산 (단위 : 천원)

보조금			후원금	전입금	이월금	잡수입	계
국비	시비	구비					
878,227	12,633,814	4,494	900,000	935,121	1,112,966	32,300	16,496,922

세출예산(단위 : 천원)

사무비	재산조성비	사업비	과년도지출	잡지출	예비비외	계
10,882,726	1,009,672	4,576,324	0	8,000	20,200	16,496,922

- 금번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된 이유는,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시설 분리에 따라 분리된 각 시설 운영 사무 각각에 대하여 신규 위탁 절차를 밟고자 제출된 것임.
- 꿈나무마을 시설분리는 「사회복지법」 제41조(시설 수용인원의 제한)<sup>2)</sup>에 따라, “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” 는 규정을 준수하여 생활아동의 복리 증진하고자,
- 현행의 600명 이상의 현원으로 운영되던 시설을 성별 및 기능별로 3개 시설로 분리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려는 것으로,
- 여기 시설 공간은 그동안 꿈나무마을 內 초등학교(알로이시오 초등학교)가 폐교 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려는 것이며,
-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**아래의 표와 같이 3개 시설(여자아동 시설-파란꿈터, 남자아동 시설-초록꿈터, 영·유아 전용시설-연두꿈터)로** 분리할 계획임.
- 참고로, 동 민간위탁의 경우 향후 ‘수의계약’ 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인데, 이는 현재의 위탁 운영자인 (재)마리아수녀회와 지난 2014년 12월에 5년간(2015. 1. 1 ~2019. 12. 31)의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던바, 금번에 법령 준수를 위해 시설을 분리하여 신규

2) **제41조(시설 수용인원의 제한)**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위탁하게 됨을 고려하여,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수탁자 선정<sup>3)</sup>)의 따라 현 수탁자와 수의 계약하며, 위탁기간은 이전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인 4년으로 한 것임.

〈시설 분리 전·후 비교표〉

시설 분리 전

시설 현황		운영자 현황	
시설명	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	법인명	(재)마리아 수녀회
소재지	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-11	대표이사	정영숙
대지면적	48,367.00㎡	소재지	부산 서구 암남동 천해남로7
건물면적	26,972.00㎡	법인설립일	1968.08.30
개원일	1975.1.1	수탁기간	2015.1.1~2019.12.31
최초위탁일	1975.1.1		

시설 분리 후

시설 현황			
시설명	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	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	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
소재지	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-11		
대지면적	5,462㎡	43,203㎡	
층별	지하1층/지상7층	지하1층/지상6층	지하1층/지상4층
건물면적	8,586.17㎡	15,692.47㎡	3,671.84㎡
보호대상	여자 아동(271명)	남자 아동(306명)	영·유아(39)

3) 제7조(수탁자 선정)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다.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.
- 그런데,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‘**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운영·관리**’에 관한 사무는, **요보호아동(3세 미만 영·유아 아동)**에 대한 보호·양육·치료 및 일시보호 및 보호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,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.
- 또한, ‘**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운영·관리**’에 관한 사무가 시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는 현행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<sup>4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및 별표 규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호<sup>5)</sup> 및 제6조 제1호<sup>6)</sup>에 따라 해당사무를

4)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>

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8.4.>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>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5)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7.30., 2012.12.31., 2014.5.14.>

위탁하려는 근거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임.

## 라.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

-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및 전문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는데,
  - ‘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운영 및 관리’에 관한 사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그들의 보호와 양육, 치료 및 일시보호 등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,
  - 이의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, 보다 그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.

- 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  - 6)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3.18., 2009.7.30., 2014.5.14.>
    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   - 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   - 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   - 4.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   - 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   -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   - 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    - 8.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
    - 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